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008 발의연월일: 2022. 3. 30.

발 의 자: 오영환·김민철·김병기

김주영 · 문정복 · 민병덕

박성준・박 정・윤준병

임오경 · 홍기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선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들이 많은 활동을 하면서 업무상 재해에 노출되고 있음.

선거사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 26. 대법원판결(2005도 9218)에 따라 이들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공직선거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거사무원을 두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선거사무원에 대한 업무상 재해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3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62條(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	第62條(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 ⑧ (생 략)		<u>④</u> ~ <u>⑨</u> (현행 제3항부터 제8
		항까지와 같음)